

서울특별시 생활범죄 예방 및 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안

(송경택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845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4년 05월 27일
발 의 자: 송경택 의원(1명)
찬 성 자: 강석주, 고광민, 김규남, 김동욱, 김영철, 김용일, 김용호, 김원중, 김재진, 김지향, 김태수, 김형재, 김혜영, 김혜지, 남궁역, 민병주, 박상혁, 박 석, 박수빈, 박영한, 서호연, 유만희, 유정인, 윤기섭, 이병운, 이봉준, 이상욱, 이종태, 최민규, 허 훈, 홍국표, 황유정, 황철규 의원(33명)

1. 제안이유

- 경찰청은 매년 시 도 경찰청별로 각종 범죄의 발생 및 검거 건수 등을 공개하고 있으며, 행정안전부도 '생활안전지도'를 통해 5대 범죄(살인, 강도, 강간, 폭력, 절도) 등에 관한 통계 정보를 공개하고 있음.
- 반면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소관 업무에 속하는 각종 생활범죄(아동학대, 가정폭력, 경범죄, 교통사고 등) 발생 검거 예방에 관한 통계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하고 있지 않음.
- 이에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로 하여금 생활범죄 통계정보를 자치구별로 공개하고 생활범죄 예방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여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안전한 사회생활 영위를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생활범죄라는 용어의 내용을 정의함(안 제2조)
- 나. 생활범죄 예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함(안 제3조)

- 다. 시민에게 공개해야 할 생활범죄 및 예방 관련 정보와 이에 바탕한 ‘생활범죄예방지도’의 작성 및 공개 방법을 규정함(안 제4조~제6조)
- 라. 생활범죄 예방계획 수립 및 정보 공개 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인력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, 제8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첨)
- 다. 기타 : 해당사항 없음.

서울특별시 생활범죄 예방 및 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서 발생하는 생활범죄 예방 및 관련 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안전한 사회 생활 영위를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“생활범죄”란 「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·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범죄 및 법규 위반을 말한다.

1.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
2. 성폭력 및 성매매
3. 학교폭력
4. 경범죄
5. 교통법규 위반

제3조(생활범죄 예방계획의 수립)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 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생활범죄 예방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.

1. 생활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
2. 자치구별 생활범죄 현황에 따른 대책
3. 생활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
4. 그 밖에 시장이 생활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4조(정보의 공개) ① 시장은 생활범죄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공개하여야 한다.

1. 자치구별 생활범죄 발생 및 검거 건수 관련 통계
2. 자치구별 전년 대비 생활범죄 증감 관련 통계
3. 자치구별 생활범죄 예방 시설 및 인력 현황
4. 기타 시장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

② 제1항에 따른 공개 정보의 세부 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제5조(생활범죄예방지도의 작성)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정보를 기초자료로 하여 자치구별 생활범죄의 위험도 및 범죄예방 시설 현황 등을 표시한 서울특별시 생활범죄예방지도(이하 “생활범죄예방지도”라 한다)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생활범죄예방지도의 작성 방법 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제6조(공개방법)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정보 및 제5조에 따른 생활범죄예방지도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.

1.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및 서울시보를 통한 공고
2.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홈페이지 게재
3. 자치구 및 경찰서를 통한 인쇄물 배포

제7조(전담인력) 시장은 생활범죄 예방계획의 수립 및 정보 공개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담인력을 운영할 수 있다.

제8조(협력체계 구축) 시장은 생활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중앙정부, 서울특별시 경찰청, 서울특별시 교육청, 관련 법인·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생활범죄 예방 및 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○ 서울특별시 생활범죄 예방 및 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안

구분	관련 조항	추계대상 여부	판단 내용
1	제3조(생활범죄) 예방계획의 수립	×	별도 비용수반 없음
2	제4조(정보의 공개)	×	별도 비용수반 없음 ²⁾
3	제5조(생활범죄예방지도의 작성)	×	생활범죄예방지도 작성에 따른 비용 발생이 있을 수 있으나 확인결과 ³⁾ 별도 비용수반 없음
4	제6조(공개의 방법)	△	인쇄물 수량 및 단가 등에 따라 비용이 상이하여 현재로서는 기술적으로 추계가 곤란함
5	제7조(전담인력)	×	기존 인력활용 시 별도 비용수반 없음 ⁴⁾
6	제8조(협력체계 구축)	×	협력체계 구축은 통상적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⁵⁾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3. 미첨부 사유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(제3조제2항)
- 동 조례안 제6조(공개의 방법)제3호에 따라 인쇄물 배포 비용이 발생하나, 확인결과 정책적(인쇄물 수량 및 단가 등)으로 정해진 바 없어 현재로서는 소요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

※ 추계 시 활용되는 소요비용 표준 산식

$$\text{인쇄물 배포 금액} = \boxed{\text{인쇄물 단가(P)}} \times \boxed{\text{인쇄물 수량(Q)}} \times \boxed{\text{기 간(T)}}$$

- 1) 동 조례안 제2조(정의)에 따라 생활범죄란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, 성폭력 및 성매매, 학교폭력, 경범죄, 교통법규 위반
- 2) 행정안전부의 경우 경찰청으로 제공 받은 5대 강력범죄 자료를 토대로 생활안전지도를 공개하고 있으므로 본 사안 또한 경찰청으로부터 생활범죄 관련통계를 제공 받아 시행함을 전제
 ∴ 통계 마련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 ※ 참고로 유관기관의 원활한 협조여부는 정책실현여부의 부분이기에 비용추계 검토사항이 아니므로 고려하지 않음
- 3) 서울시 공간정보담당관 소관 스마트서울맵(붙임 참고)을 활용한 지도 작성(비예산)을 전제로 함
 ∴ 관련 통계를 활용하여 별도의 비용 없이 지도서비스 제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
- 4) 추가인력 채용 시 비용이 발생하나 업무추진 시 기존 인력활용(인력 재배치 등)의 경우가 많았기에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- 5) 협력체계 구축(업무협조)의 경우 통상적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추계대상에서 제외함
 - 다만 본 안의 경우 범죄통계제공 등 유관기관의 협조가 중요하기에 하나의 단일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으나 현재 정책적으로 구축범위 및 방법 등이 정해진 바 없어 사업의 상황 및 소요비용에 대해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함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
담 당 관 오 희 선

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

추계분석관 손 제 승

☎ 02-2180-7954

e-mail : smclt22@seoul.go.kr

[붙임] 서울시 스마트서울맵 도시생활지도 서울경찰 테마



자료 : 서울시 스마트서울맵